## KOSHA GUIDE

C - 57 - 2017

- (7) 리프트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할 경우에는 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석재의 현장가공을 위해 전동식 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이중 절연구조의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9) 이동식 전동기계·기구는 접지를 실시하거나 누전차단기와 결속하여 절연파손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10) 현장 석재가공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귀마개,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1) 전동식 윈치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할 경우에는 윈치의 고정지점 등 지지방법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, 윈치의 권과방지장치,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2) 전동식 원치에 의한 석재 양중작업 시 석재가 다른 물체에 부딪혀 탈락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야 하고, 윈치를 비계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3) 고소작업차를 사용 할 경우에는 KOSHA GUIDE M-86-2011(고소작업차 안전 운전 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
- (14) 리프트, 곤돌라, 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KOSHA GUIDE M-79-2011(양중설비의 관리에 관한 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
- (15) 석재를 인력운반 할 경우에는 KOSHA GUIDE G-119-2015(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
- (16) 건축물 외부 석공사 작업 시 비,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